# 평창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

(장문혁 의원 대표발의)

| 의안 번호 | 446 |
|---|---|

**발의연월일 : 2022년 01월 13일**

**발 의 자 이주웅, 박찬원, 지광천, 심현정, 이명순의원**

## 1. 제안이유

○ ‘22년 1월 13일부터 전부 개정되는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라,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·교육·훈련·복무·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여야 함.

○ 평창군의회 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사무기구 직무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규칙의 목적(안 제1조)

나. 직무대리의 순위(안 제2조, 제3조)

다. 직무대리자의 책임(안 제4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붙임 참조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
다. 입법예고 : 2022. 01. 05. ~ 2022. 01. 10.(5일간), 의견 없음.

라. 집행기관의견수렴 : 2022. 01. 04.~ 2022. 01. 10. 의견 없음.

평창군의회 규칙 제 호

# 평창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평창군의회 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,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법정대리)** 평창군의회 의장(이하 '의장'이라 한다)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, 출장, 그 밖의 사고(이하 "사고"라 한다)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(이하 "대리"라 한다)한다.

1.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.
2. 의회의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.

**제3조(지정대리)**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.

②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, 그 지정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.

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

다.

**제4조(책임)**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관계법령]

## 지방자치법

**제59조(의장 직무대리)** 지방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.

**제60조(임시의장)**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.

**제103조(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)**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·감독하고 법령과 조례·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·교육·훈련·복무·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.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해당사항 없음.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

## 3. 미첨부 사유

○본 규칙안 시행으로 추가 발생비용 없음

## 4. 작성자

| | |
|---|---|
| 작성자 | 평창군의회 장문혁의원 |
| 연락처 | (033) 330 -2506 |